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1 호
----------	--------

제출년월일 : 1999. 12. 1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 납골당이란 명칭이 혐오감을주는명칭으로서 이를 변경하여 이미지개선과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함

2. 주요골자

- 가) 납골당의 명칭변경(제명)
 - 당초 :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 변경 : 고성군영생의집설치및관리조례
- 나) 유골봉안기간연장 변경(안 제7조)
- 다)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안 제10조)

3.참고사항

- 납골당 명칭변경 제안및선정사항
- 입법예고 :예고('99.11. 9 ~ 11.28)

4.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고성군영생의집설치및관리조례”로한다.

제1조 본문중 “고성군공설납골당”을“고성군영생의집”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고성군 납골당”을 “고성군 영생의 집”으로 하고 “납골당”을 “영생의 집”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납골당”을 “영생의집”으로 한다.

제4조 “납골당”을 “영생의집”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납골당”을 “영생의집”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10년”을“15년”으로 하고 “매년3년간씩의 기간으로”를“15년단위로”한다

제10조 제목“사용료및관리비”를“사용료”로하고 제1항중“관리비”를삭제하며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단위:원)

구분	기준	사용기간	사용료	
			관내	관외
유연고 유골	1구당	15년 (15년단위로연장가능)	100,000	200,000
무연고 유골	1구당	10년	75,000	150,000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p> <p>제1조(목적) 이조례는 묘지로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공설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위치) ①납골당의 명칭은 고성군 공설납골당(이하“납골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납골당은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에 둔다.</p> <p>제3조(관리인) ①납골당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생략</p> <p>제4조(위탁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골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유골의봉안) ①납골당에 봉안하는 유골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의 무연고 유골을 우선봉안하되 봉안장소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가 있는 유골도 봉안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p> <p>제7조(봉안기간) ① 생략 ② 연고자의 신청에 의한 유골의 봉안 기간은 10년으로하되, 연고자의 봉안기간 연장 신청으로 매3년간씩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료및관리비) ①연고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골 봉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한 후 유골을 봉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p>제명:고성군영생의집설치및관리조례</p> <p>제1조(목적)..... 영생의집</p> <p>제2조(명칭과위치) ①..... 영생의집(....“영생의집”.....) ②영생의집</p> <p>제3조(관리인) ①영생의집</p> <p>②현행과같음</p> <p>제4조(위탁관리) 영생의집</p> <p>제5조(유골의봉안) ①영생의집..... ②현행과같음</p> <p>제7조(봉안기간) ①(현행과 같음) ②..... 15년..... 15년단위로</p> <p>제10조(사용료) ① (삭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구분	기준	계	사용료	관리비	구분	기준	사용기간	사용료	
최초봉안(10년)	1구당	30,000	20,000	10,000				관내	관외
매1회연장(3년)	1구당	15,000	10,000	5,000	유연고유골	1구당	15년(15년단위로연장가능)	100,000	200,000
					무연고유골	1구당	10년	75,000	150,000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